추가약정서 (다함께성장 미래채권담보대출용)

(한전 협력기업용)

㈜하나은행 앞

채무자(이하 “본인”이라 함)는 20 년 월 일자 거래약정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약정은㈜ 하나은행(이하 은행이라 한다)과 (이하 구매기업이라 한다)이(가) 체결한 " 협력기업 지원을 위한 다함께성장론 협약" (이하 협약이라 한다)을 근거로 1 차 협력기업인 본인이 다함께성장 미래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서비스의 가입)

① 본인은 은행의 결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협력기업지원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기로 합니다.

② 협력기업지원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협력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시 협력기업지원시스템 운용사업자와 약정한 바에 따르며, 은행은 협력기업지원시스템 운용 사업자가 통보한 본인의 이용료 지급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출금액에서 이용료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③ ②항의 고객부담 비용 외에 은행의 협력기업지원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은 협력기업지원시스템 운용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조 (결제계좌의 지정)

① 은행의 결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대출금 입금과 대출금 상환을 위한 결제계좌를 지정운용합니다.(㈜ 하나은행 에 개설된 계좌로 합니다.)

계좌번호	예금주

② 은행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"협약"에 의거 구매기업이 지급하는 결제자금을 수령하기로 합니다. 이 가상계좌는 영업점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출금이 제한되며 협력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에 수신되는 결제정보 전문에 의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기로 합니다. 은행은 결제정보를 수령한 영업일의 영업시간중에 별도의 통장 및 예금청구서 없이 가상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다함께성장론 미래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하고, 잔액을 ①항에 지정한 입금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.

제 4 조 (발주서 전송, 취소 및 변경)

① 발주서는 구매기업과 본인의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하

(2016.06.07개정)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6-약관-289 호
(보존년한:완제일로부터 5 년)

여 은행 및 본인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.
② 구매기업은 발주서를 통보한 이후 "다함께성장론" 대출실행전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의 납품계약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기로 합니다.
③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발주서 전송시, 은행은 발주서를 강제로 취소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은행은 본인 및 구매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
④ 구매기업의 발주서 취소 또는 변경은 본인이 납품을 완료한 후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을 확정하여 은행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불가하기로 합니다.

제 5 조 (대출의 신청 및 실행)
① 은행은 발주서 금액의 80% 범위내에서 대출신청가능금액을 당행 인터넷뱅킹에 게시하기로 하며, 대출신청가능금액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② 대출신청은 발주서 정보가 은행 인터넷뱅킹에 게시된 날로부터 발주서상의 납품기한 전영업일까지 발주서 단위로 신청하며, 분할신청 가능합니다.
③ 본인은 약정한도 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며, 대출금은 제 3 조에서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받기로 합니다.
④ 대출이자는 취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대출취급일에 일괄선취하기로 합니다.
⑤ 인터넷 등 전산상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

제6조 (대출기간)
① 대출한도 약정기한은 은행과 구매업체와의 업무협약서 유효기간 이내로 약정하기로 합니다.
② 개별대출의 실행기간은 발주서 상의 납품기한으로부터 60일이내로 하되, 최장 180일이내로 합니다.
③ 계약의 특성, 계약 변경 등으로 납품기한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감안하여 대출기간을 달리 정할수 있기로 하며, 이 경우 대출기간은 은행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7조 (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
① 대출금은 "구매기업"과 은행이 체결한 "협약"에 의거 지급되는 결제자금으로 상환하거나, 구매기업이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
② 제1항에 의거 개별 대출기한 전에 상환하는 순서는 미래채권담보대출 만기일이 빠른 순서로 상환하기로 합니다.
③ 대출 만기일까지 구매기업이 통보한 매출채권 금액이 대출실행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출 만기일에 그 차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

제8조 (전자결제 변경 등)

(2016.06.07개정)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6-약관-289 호
(보존년한:완제일로부터 5 년)

구매기업과의 전자결제와 관련하여 **본인은 미래채권담보대출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전자결제방법과 결제은행을 변경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**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를 위해 본인이 은행에 신고한 입금계좌는 귀행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제9조 (대출의 중단, 제한 및 상환)
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본 약정에 따른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 할 수 있기로 하며, **은행 요청시 본인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**

① 구매기업이 귀행에서 정한 미래채권담보대출 약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
② 본인이 타행과 중복 약정을 체결한 경우
③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 및 감액,반품,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등으로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못받게 된 경우
④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자금융통 등을 위해 허위로 발주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
⑤ 본인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⑥ 구매기업으로부터 미래채권담보대출 추천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
⑦ 제7조 ③항에 따른 상환이 되지 않은 경우 신규 대출실행을 중단하기로 합니다.
⑧ 귀행의 내부규정 변경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0조 (면책)

본인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채무자 **성 명** (인)

주소

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(계약서)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.	본인 (인)

본인의 자서확인	**소 속**		**직 위**		**성명** (인)

(2016.06.07개정)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6-약관-289 호
(보존년한:완제일로부터 5 년)